

생애최초 특별공급 서류 안내

| 서류 | | 발급기준 | 세부사항 | |
|------------------|--|---|---|---|
| 필수 사항 | 신분증 / 인감도장 | 본인 |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(2020.12.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) ※ 2020.12.21. 이후 신규발급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※ 재외동포: 국내거소사실신고증 / 외국인: 외국인등록증 | |
| |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| | 용도: 주택공급신청(계약)용 (본인 발급용, 대리인 발급용 불가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대리불가 | |
| | 주민등록표등본(전체 포함) | |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 발급 | |
| | 주민등록표초본(전체 포함) | |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 발급 | |
|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 |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"상세" 로 발급 | |
| |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| |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※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모집공고 32p 참조 | |
| |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| |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※ 기록대조일: 생년월일 ~ 현재로 설정(주민센터 또는 정부24)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(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) | |
| |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|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|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(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)으로 공급 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(배우자 분리세대 포함) | |
| 소득증빙서류 |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) (※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모집공고 30~31p 참조) | | | |
| 추가 사항 | 복무 확인서 | 본인 |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(수도권)으로 당첨된 경우 군복무기간(10년 이상)명시 | |
| 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| 본인 |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여부 확인 | |
| | 주민등록표등본(배우자) | 배우자 |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(전체 포함으로 발급) | |
| | 전세 피해자 확인 서류 | 본인 또는 세대원 |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(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한 기간)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| |
| | 단신부입 |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| 본인 |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: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: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는 인정 불가 ※ 해외에서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|
| | |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| 배우자 및 세대원 |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※ 기록대조일: 생년월일 ~ 현재로 설정(주민센터 또는 정부24)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|
| | 비사업자확인각서 |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|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(견본주택에 비치) | |
| |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 |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| 비사업자확인각서 제출 시 '소득사실 없음' 확인 가능해야 함 | |
|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 배우자 |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) | |
| 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| 자녀 |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'미혼 자녀'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| |
|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| 본인 또는 배우자 | 임신 중인 태아 또는 입양자녀를 가구원수에 포함하기 위한 경우*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(담당의사명, 의료기관등록번호, 질병코드번호, 출산예정일,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,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) | | |
| 출산이행 각서 | | 임신의 경우 (견본주택에 비치) | | |
| 부동산 소유 현황 | 본인 및 세대원 전원 |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※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모집공고 32p 참조 ※ 발급처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/ 등기열람/발급 / 부동산 / 부동산소유현황 (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) | | |
| 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 | 피부양 직계존속 |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(1년 이상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"전체 포함"으로 발급) | | |
| 대리인 | 위임장 | 본인 | 접수 장소 비치(신청자 인감도장 날인) | |
| |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| 본인 | 용도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(본인 발급용, 대리인 발급용 불가) 단,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 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※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| |
| | 대리인 신분증 | 대리인 |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(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) | |
| | 대리인 인장 | 대리인 | 서명 가능 | |

※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/ 상기 내용에 오류가 있을 시 입주자모집공고자 우선 합니다